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57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강훈식 · 민병덕 · 김한규

김남근 · 강준현 · 김병기

김용만 • 이정문 • 박상혁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조치"를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⑤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제재조치에 따른 임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직 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디	대한 🗦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u>조치</u>) ① ~ ③ (생 략)		<u>조치 등</u>) ① ~ ③ (현행과 같
		<u>수</u>
<u> <신 설></u>		④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
		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
		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
		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이 되지 못한다.
<u> <신 설></u>		⑤ 제2항 또는 「특정 금융거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
		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임
		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